#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

<2023.12.22.(금), 중앙환자안전센터>

#### □ 보고 및 접수 단계

- **(보고대상)** 「환자안전법」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 기관인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
  - 그 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가능
- (보고유형) 「환자안전법」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
- 법 제14조(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)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「의료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, 수혈,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·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  - 2.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·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  - 3.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
  - 4.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·정신 적 손상을 입은 경우
- (검증) 주요부분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입력 요청
- (분류)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내용의 전문적인 분석을 위하여 분류 체계에 따라 보고서식의 각 항목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
- (암호화) 보건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한 보고자 정보와 그 외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 암호화 조치(자율보고의 경우 삭제)
- (등록) 암호화 조치가 완료된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에 대하여 등록 완료 처리

#### □ 지원 단계

- **(추가 보완 요청)** 현장지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자료 보완 요청
  -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우,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\*
    - \* 필요시 관련 자료 작성 및 추가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가능
  - 보건의료기관에서 보완하여 제출한 수정 보고서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통한 전문가 검토 및 결과 회신
- (환자안전 현장지원) 현장지원 신청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관련 요인 파악, 재발방지 대책 마련, 개선방안 도출 등 맞춤형 지원 및 개선사항 유지 모니터링 시행
  - 위험요인 발굴 및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·개선방안 도출 등 자체역량 강화 지원
  - 지원을 통해 도출한 심층적 분석 결과, 개선활동 등을 포함한 보고서 제공
- (유지 모니터링) 기관에서 제출한 수정 보고서의 개선계획 시행 결과 제출 요청 등 모니터링 시행

### □ 분석 단계

- (환자안전 분석환류그룹) 환자안전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의 경보 및 정보제공 등 환류방안 마련
- (사례분석 TF 운영)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고 등 필요성에 따라 선정된 사례에 대한 전문 적인 분석과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재발방지대책 마련

## □ 환류 단계

○ (정보 공유)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등 다양한 환자 안전 정보제공(주의경보, 정보제공, 주제별 보고서, 통계연보 등)